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 2935호

제출년월일 2021. 11. . 제 출 자 김 계 순 의원

1. 제안이유

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「지방자치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독립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행위의 제한사항 규정(안 5조)
- 나. 불명확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사항을 명확히 규정(안 제7조)
- 다. 지방의회 의원 위반 시 윤리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4조,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「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생략

나) 예고결과 :

2) 부서협의

가) 협의기간 : 해당없음

나) 협의결과 :

3) 관련부서 : 의회사무국

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전부터「지방자치법」제35조제1항"을 "전부터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의원이「지방자치법」제35조제3항"을 "의원이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3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「지방자치법」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"로, "권고할 수 있다"를 "권고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4조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
- 2.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「지방자치법」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6조를 삭제하고, 제5조를 제6조로 하며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5조(영리행위의 제한)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 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 및 그 기관·단체가 설립·운영 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의원은 「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

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.

제7조를 제8조로 하고, 같은 조(종전의 제7조)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"을 "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"로 하며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다만"을 "이 경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겸직을 하는 것이 「지방자치법」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"를 "제4조제5항에 따라"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제5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
- 제7조(겸직금지)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 및 그 기관·단체가 설립·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, 임원,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(자문위원회는 제 외)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 - 1. 김포시가 출자・출연(재출자・재출연을 포함)한 기관・단체
 - 2. 김포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단체
 - 3. 김포시로부터 운영비·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·단체
 - 4. 법령에 따라 김포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(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 운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)의 임직원
 -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조(겸직신고) ① 지방의회의원이 당	제4조(겸직신고) ①		
선 전부터「지방자치법」제35조제1	- 전부터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1		
<u>항</u>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	<u> 히</u>		
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			
내에,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			
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			
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			
야 한다.			
② 의원이「지방자치법」제35조제3	② 의원이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		
<u>항</u> 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	<u>3</u> কু		
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			
따른다.		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		
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	⑤		
것이 「지방자치법」제36조제2항에	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</u>		
<u>위반된다고 인정할 때</u> 에는 그 겸한	<u>하는 경우</u>		
직을 사임할 것을 <u>권고할 수 있다</u> .	<u>권고하여야 한다</u> .		
<후단 신설>	이 경우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에		
	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		
	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		
	한다.		
<u><신 설></u>	1.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5항에 해		
	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		
	사임하지 아니할 때		
<u><신 설></u>	2.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「지방자치		

<신 설>

<u>제5조</u> (생 략) <신 설> 법」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

제5조(영리행위의 제한) ① 의원은 해 당지방자치단체, 「지방자치법」 제 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·단체 및 그 기관·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. ② 의원은 「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 레」제4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 지 못한다.

제6조 (현행 제5조와 같음)

- 제7조(겸직금지)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 및 그 기관·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시설의 대표, 임원,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(자문위원회는 제외)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 - 1. 김포시가 출자·출연(재출자·재 출연을 포함)한 기관·단체
 - 2. 김포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·단체
 - 3. 김포시로부터 운영비·사업비 등 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·단체
 - 4. 법령에 따라 김포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(조합설립을 위한

제6조(관리인 등 겸직 금지)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.
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
 제7조(징계 등)
 지방의회의원이 다음
 제

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
 또보회의

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
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. 다

 만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.

- 1. (생략)
- 2. <u>겸직을 하는 것이 「지방자치법」</u> <u>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</u> 실시한 사 임권고를 거부
- 3. (생략)
- 4.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 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
- 5. (생략)
- 6.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 권고를 거부

추진위운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)의 임직원

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.<삭 제>

4	<u>8조</u> (징계 능)		
				- <u>윤리특</u>
	별위원회의	심사를	거쳐	의결로써
	<u> 징계를</u>			<u>이 경</u>
	<u> </u>			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<u>제4조제5항에 따라</u> ------

O /뉟케키 키ㅇ\

- 3. (현행과 같음)
- 4. 제5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 <u>반</u>
- 5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